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4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2.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5.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의 자치구 위임

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 지난 20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도입됨.
- 야생생물법의 개정 내용¹⁾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처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함.
 -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이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같은 법 제8조의4)²⁾.

1)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69조(벌칙)제1항제1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은 2023. 12. 14.부터 시행됨(법률 제19088호 부칙 제1조 단서).

2) 업무 위탁 규정(야생생물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생태원 내에 유기 야생동물

- 또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는 야생동물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어 2025. 12. 14 시행 예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생산·판매·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같은 법 제22조의5)³⁾.
- 아울러 기존의 야생동물 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전시자가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규정의 시행일 전(2023. 12. 13.)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대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⁴⁾이 신설됨.

- 기존 전시자(야생동물법 공포(22.12.13.) 당시 전시자는 2023. 12. 13.까지 관련 현황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 12. 13.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2024년 7월 기준 신고현황: 12개 자치구 23개 시설 신고

< 법 개정 전후 야생동물 시설 유형별 변화 >

종전 사각지대	관리제도 신설		지자체 사무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	야생동물 전시시설	전시금지 (기존 시설은 신고 시 '27.12.13.까지 유예)	전시 신고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시설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 전시 가능 ('25.12.14.부터)	영업 허가	자치구

자료: 푸른도시여가국(現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3)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하 중략)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 4) 법률 제19088호 야생동물법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유형별 전시시설 신고현황 >

(’24. 7월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계	전시시설*	판매시설**
계	23	7	16
종로구	5	1	4
광진구	1	1	-
은평구	2	1	1
마포구	3	3	-
강서구	1	1	-
구로구	3	-	3
영등포구	1	-	1
관악구	2	-	2
서초구	1	-	1
강남구	1	-	1
송파구	1	-	1
강동구	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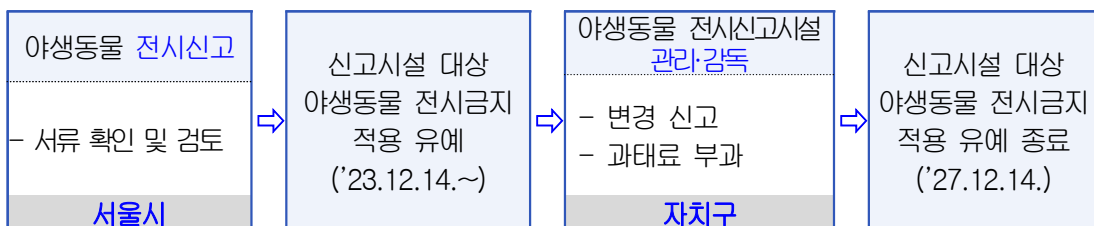
* 전시시설 : 시장에게 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27.12.13.까지 전시 가능

** 판매시설 : 현재 허가없이 판매시설 운영가능하나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시장에게 신고 필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25. 12. 14.) 이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전시 지속 가능

나. 개정 내용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 위임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수리’ 사무와 전시행위 유예기간 동안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것임.

< 개정 내용에 따른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관련 업무 절차 >



-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신고 처리 사무는 서울시에서 이미 수행(2023. 12. 13.)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만 규정함.

5)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주관 부처	사무명	근거법령	수원	주관 부처	사무명	근거법령	수원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자연 생태과	4. 동물원수족관 이 아닌 야생 동물 전시 신 고 시설의 관 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구청장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2025. 1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 행위는 주로 구청장의 영업허가에 의해 야생동물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업체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미리 일원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특히 2024년 7월 기준으로 신고된 전시시설 유형 중 판매시설 비중이 70%(16개소)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야생동물 전시가 판매시설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판매시설은 허가제 시행 이후 구청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원 편의 및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무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관리·감독(변경신고·과태료 부과)에 관한 민원사무로서 조례상의 위임기준도 충족하므로⁶⁾ 동 사무를 위임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동 사무의 위임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에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위임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⁷⁾.

3.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의 환수

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무 개요 및 환수 배경

-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개설허가권자가 구분되어 있음.

< 의원급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 병원급 ⇒ 시·도지사 허가 >

제33조(개설 등)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개설 및 변경허가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이는 198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⁸⁾.

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조례 제2523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9. 11. 16. 공포).

< 현행 조례상 의료기관 관리권한 구분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구청장

- 그러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개설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한 의료기관의 분포⁹⁾,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담병상 신속 확보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감염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의료기관 관리권한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병상관리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¹⁰⁾에서도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경우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 지사로 재정비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나. 개정 내용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되, 서울시와 자치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는 구청장으로서의 위임을 유지하였음.

9) '24. 8. 12. 기준 서울시의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강남구 66개소, 송파구 42개소, 용산구 2개소, 중구·성동구 각 10개소, 동작구·종로구 각 11개소 등이며, 병상수는 강남구 6,878개, 송파구 6,324개, 용산구 775개, 중구 788개, 마포구 856개 등으로 지역 간 편차와 병상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1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보건복지부-7436, 2023. 8. 14.).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u>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 양병원 또는 정 신병원(이하 "병 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병원 등</u> 의 변경 허가	○ 「의료 법」 제33 조제4항 ○ 「의료 법」 제33 조제5항	구청장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u>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 병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종합병원· 병원 등의 변경</u> 허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바, 그 동안 자치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따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중앙정부 기본시책의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 병원 개설허가 사무의 환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동 사무의 환수와 관련한 자치구의 의견조회 결과 개설허가 권한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권한 또한 함께 환수토록 요청하는 의견¹¹⁾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종합병원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관련 사무처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변경허가 권한의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와 위임 근거 법령 등 정비

가.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11) 25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강남·중랑)는 종합병원 변경 허가권한도 함께 환수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함. 그 외 23개 자치구는 동의 의견임(동의 14, 의견없음 9).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관리 관련 사무’ (문화예술과)와 ‘대중골프장 병설 사무’ (체육정책과)를 정비하고 있음.
- 먼저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신고·폐업 등의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¹²⁾이 시행되면서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없어짐.
- 또한 대중골프장 병설 사무¹³⁾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를 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 대중골프장 수의 증가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¹⁴⁾이 시행된 만큼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같이 두 사무 모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시민의 혼선 방지와 체계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사무를 정비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임.
- 다만 서울시가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방치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입법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12) 법률 14431호, 개정 2016. 12. 20., 시행 2017. 6. 21.(개정 이전의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13) 법률 제19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용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並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14) 법률 제19252호, 개정 2023. 3. 21., 시행 2023. 4. 22.

나. 위임 근거 법령 및 사무명 등 정비

-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무명, 자구 및 오타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위임 근거 법령 및 사무명 등 정비 내역 >

위임사무와 무관한 근거 법령 정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명 정비	기타 용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등록 사무의 근거 법령 정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삭제,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삭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사무 근거 법령 정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를 제5조로 변경,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 추가 • 건축사무소에 관한 사무 근거법령 정비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등록 사무의 근거 법령 정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 신고 근거 법령 정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제51조제6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사무명 정비 → 「건축사법」 개정(법률 제10756호, '12. 5. 31. 시행)에 따라 '건축사업', '건축사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로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명 자구 수정 → '등록의 갱정'을 '등록의 경정'으로 변경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명 자구 수정 →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를 '검사증의 발급'으로, 검사의 '최고'를 '명령'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오타 등 수정 →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운반법'을 '운반업'으로 변경 및 그 밖에 띄어쓰기 수정 • 약칭 수정 → '주·정차 단속'을 '주차 및 정차 단속'으로 변경 등

- 이는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할 것임.

5. 주관부서의 변경

-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의 주관부서(생활환경과)에 자원순환과를 추가함.
-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으로는 2024. 1. 1. 조직개편¹⁵⁾에 따라 종전의 ‘전략산업기반과’가 ‘산업입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2024. 7. 1. 조직개편¹⁶⁾에 따라 변동된 다수의 사항을 반영함(아래 표 참조).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실, 공정경제담당관 → 공정경제과
- 농수산유통담당관 → 농수산유통과, 공동주택지원과 → 공동주택과
-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사무 주관부서 변경: 교통지도과 → 주차계획과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스마트건강과 → 건강관리과
-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사무(건설혁신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재난안전실 건설혁신과 →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주관 부서 변경
: 도로관리과 → 보행환경개선과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사무 주관부서 변경
: 주택정책과 → 임대주택과

15)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

16) 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그리고 업무이관 등에 따른 주관부서의 추가·변경 내용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업무이관 등에 따른 주관부서의 추가·변경 내역 >

사무명	주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u>기후환경정책과</u> → 삭제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u>자원회수시설과</u> → 추가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u>물재생시설과</u> → 추가 (물순환안전국)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사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u>자원회수시설과</u> → 추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 ¹⁷⁾	창의행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자체점검¹⁸⁾을 통해 발굴한 개정사항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58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11호.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사무는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직담당관의 분장사무에서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이관(2022. 1. 1.)되었으나 2023년 8월 개편('23. 8. 21.)에 따라 조직담당관으로 다시 환원됨.

1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실국별 자체점검 및 변경사항 제출 요청, 조직담당관-2655(2024. 3. 7.)